

24HRS 상표권 침해 - 디자인으로 사용 불인정 및 상표적 사용 인정: 특허법원 2019. 10.

31. 선고 2018나1640 판결



사용표장의 광고 내용, 표장의 사용 위치, 크기 등 구체적 사용태양에 비추어 보면, 피고들의 사용표장 사용은 의류와 모자 제품류에서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상표의 전형적인 사용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상표 기능이 배제된 채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
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인 "24HRS"와 피고들의 제품에 표시된 "24 HRS",

"24 HRS", "24 HRS"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 "24"와 시간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'hours'의 약어인 영문대문자 "HRS"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그 외관이 동일·유사하고, '이십사 에이취 알에스' 또는 '트웨니 포 아우어즈'로 호칭되고 '24시간'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그 호칭 및 관념도 동일하므로, 그 표장이 서로 동일·유사하다.

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청바지, 등산복을 비롯한 각종 의류와 모자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, 피고들의 사용제품들은 의류와 모자이므로,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들의 사용상품도 동일하다.

따라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·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와 모자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.

첨부: 특허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8나1640 판결

변리사25년/변호사17년, 특허심판소송, 민형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Service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